

박형준 / 2월+3월+5월 / 도약 GS / 5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29059	20.5	13.5	17.5	13.5	65	1	2.13%	7	47
534806	19	11	19	13	62	2	4.26%	6	
534241	20.6	13.5	14.5	12	60.6	3	6.38%	7	
529237	19.5	12.1	16.7	12	60.3	4	8.51%	6	
534380	19.5	12.5	16.5	11.5	60	5	10.64%	7	
534175	20	12.5	15.7	11.7	59.9	6	12.77%	5	
534160	20.6	13.5	16	9	59.1	7	14.89%	6	
528964	19.4	13	14	12.5	58.9	8	17.02%	7	
536423	19.5	12	15.5	10.5	57.5	9	19.15%	6	
534391	19.5	11.4	15.5	11	57.4	10	21.28%	5	
534196	20.3	11.5	13	12	56.8	11	23.40%	6	
534165	19.5	12	13.5	11.2	56.2	12	25.53%	5	
534187	18.2	13	14	10.5	55.7	13	27.66%	5	
534346	19	11.5	15.5	9.5	55.5	14	29.79%	4	
534381	19.7	12.5	14	9	55.2	15	31.91%	6	
534365	16	13.5	15	10	54.5	16	34.04%	6	
534398	17.8	13	11.5	12	54.3	17	36.17%	7	
529402	19.5	12.5	13.5	8	53.5	18	38.30%	5	
534231	18.5	11.5	13	10.5	53.5	18	38.30%	6	
536429	17.5	12	12.5	11	53	20	42.55%	5	
534423	19.3	12	13	8.5	52.8	21	44.68%	6	
534161	19	11.5	13	9	52.5	22	46.81%	4	
534468	19	12	14	7.5	52.5	22	46.81%	4	
534166	20.7	13.5	11.7	5.5	51.4	24	51.06%	4	
529129	20.1	12.5	12.5	6	51.1	25	53.19%	5	
534347	17.5	11	12.5	10	51	26	55.32%	4	
529277	18	11.3	11.5	10	50.8	27	57.45%	5	
534205	18.3	12.5	15	5	50.8	27	57.45%	4	
534358	20.3	12.5	11.5	6	50.3	29	61.70%	5	
528987	17	7.5	14	11.5	50	30	63.83%	5	
534250	18.2	11.5	12	8	49.7	31	65.96%	5	
534348	17.5	12	14	6	49.5	32	68.09%	4	
534233	16	11	12.5	9.5	49	33	70.21%	4	
534162	15.5	11.5	13.5	8.5	49	33	70.21%	5	
534514	18.5	13	16	1.5	49	33	70.21%	6	
534425	16.5	10.5	13.5	8	48.5	36	76.60%	5	
542857	18.5	9.5	13	7.5	48.5	36	76.60%	5	
534202	19	12.5	11	5.5	48	38	80.85%	6	
534343	18	11	10.5	8.5	48	38	80.85%	4	
534194	20	11.5	11	4	46.5	40	85.11%	4	
534188	18.5	11	9	7.5	46	41	87.23%	5	
534163	16.3	11.5	11	7	45.8	42	89.36%	5	
534355	16.5	12	7	7.5	43	43	91.49%	5	
534426	18	9	6.5	5.5	39	44	93.62%	5	
534247	16	11.5	6.5	4.5	38.5	45	95.74%	5	
534396	13.5	11.6	11.5	0	36.6	46	97.87%	4	
534728	17.5	12	0	0	29.5	47	100.00%	5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2월/도약GS/5회/1번</b></p>	<p><b>채점자</b></p>
	<p><b>이정은</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설문1,2는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설문3에서 점수가 변별된 것 같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조치 문제로, 기본서에 있는 조치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들 잘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 병기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조치별로 목차 잡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구매판매-소진이론은 많이 누락하셔서 기재하신 경우에 추가배점했습니다.</p> <p>(3) 설문 3</p> <p>특허권 하자 검토를 너무 두껍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부남자 판단에서 두껍게 판례 기재하고 사안포섭하는 것이 더 논점에 맞는 내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부남자 누락하신 경우나, 이 중 하나를 누락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4) 설문 4</p> <p>부인과 정정의 재항변을 목차 나누어서 강약조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정의 재항변을 두껍게 기재해서 진보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줄처리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강약조절 더 유념하면서 답안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3. 소결</b></p> <p>설문3과 설문4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답안지 형식을 만드려고 하기보다는, 배점과 묻는 바에 따라 유동적으로 답안지 목차를 잡아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박형준/2월/도약GS/5회/2번</b></p>	<p><b>채점자</b></p>
	<p><b>이정은</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이용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이용관계 관련 규정은 기재해주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관계 성립여부 학설은 줄처리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방법에 대해서, 조치는 묶어서 줄글로 쓰기보다는 줄처리라도 목차를 나누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선원권리자의 실시제한에 대해서 목차 외워두고 다음에는 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3) 설문 3</p> <p>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역시 조치는 다각적으로, 목차 나누어서 써주면 좋습니다.</p> <p><b>3. 소결</b></p> <p>중요논점에 해당해서 다들 잘 써주셨으나, 선결논점으로 적어줄 부분을 기본서에 표시해두거나 제목이라도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파이팅입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2월/도약GS/5회/3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각 행위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행위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 사소한 행위의 경우 누락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방법발명에 대하여 권리 소진이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를 두껍게 작성했는지, 사안 포섭을 체계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 사용 전 구매 행위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p> <p>(2) 설문 2</p> <p>마찬가지로 교체행위만 검토하고 교체 전/후 사용행위를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교체 행위의 경우 설문상 불분명하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대부분 제작*공급행위와 검수*시연행위를 구분하여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안포섭 보다는 판례에 키워드를 포함하여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b>3. 소결</b></p> <p>침해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 각 행위마다 평가를 달리해주셔야 합니다. 행위별로 목차를 달리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할 경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침해 요건 일반론에 대해 길게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이 경우 강약 조절이 된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2월/도약GS/5회/4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20점 내 소문이 총 5문제로 각 행위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다소 낮은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반론보다 사안 해결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셔야 했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물건 발명의 권리 소진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5에 작성해야 하는 “본다쉽교따” 판례를 설문 2에 작성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안 포섭을 체계적으로 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무권리자로부터 구매하여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으나 가정적으로 사용하여 침해라고 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일반론에는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p>(4) 설문 4</p> <p>교체 행위가 프린터의 생산에 해당하나 가정적 생산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마찬가지로 일반론에는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p>(5) 설문 5</p> <p>“본다쉽교따” 판례를 설문(2)에 써버려서 설문(5)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p>	

“본다쉽교따” 판례를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판례에서 실시한 요건을 모두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 **3. 소결**

답이 명확한 만큼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놓친 판례 키워드와 사안 포섭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lt;문제-1&gt;

## I. 설문 (1)

4. 2

## 1. 사전적 가치

서면 경고, 침해금지가치불, ~~침해~~가압류, 증거보존, 징구제, 권리범위확인심판 (법 135조) 청구할 수 있다.

## 2. 민사상 가치

## (1) 침해금지청구 - 법 126조

甲은 乙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침해예방청구, 폐기, 서면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2) 손해배상청구 - 법 128조

甲은 乙에 대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 (3) 기타

신용회복청구, 복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3. 형사상 가치

## (1) 침해죄 고소 - 법 225조

甲은 乙을 상대로 침해죄 고소할 수 있다.

## (2) 기타

몰수, 양벌규정 고려해복 수 있다. (법 231조, 230조)

## 4. 기타 권리

실시권 계약, 특허권 양도, 허락, 권리, 중재 등 시도해볼 수 있다.

## II. 질문 (2)

2. ∞

## 1. 중단

2은  $A+B+C$  제2. 판매 행위 중단할 수 있다.

## 2. 허락, 특허권 양도

2은  $\text{甲}$ 에게 허락 또는  $\text{甲}$  특허권 양수를 통해 계속 실시할 수 있다.

## 3. 특허권 하자 관련

신행기술 기사 등을 통해  $\text{甲}$  특허권 하자를 찾아 관련 항변. 무효심판 청구, 특허권 포기 가능 할 수 있다.

## 4. 소진이론

$\text{甲}$ 으로부터  $A+B$ 를 구매하여 소진될 물건으로  $A+B+C$  제2. 판매할 수 있다.

## 5. 기타

허락, 제2. 중재, 여공정, 협회사법 등 할 수 있다.

Ⅲ. 설문 (3)	
1. 특허권 하자 검토	
(1) 신규성 여부 - <u>특정 2921항</u>	
	단일비교 원칙 (특정제) 에 따라 甲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된다.
(2) 진본성 여부 - <u>특정 2922항</u>	
	선행기술 1, 2와 특허발명 비교해볼 때, 진본성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취지 - <u>특정 133조</u>	
	공익상 하자있는 특허 선언시키는 제도이다.
(2) 사안	
	2은 甲 특허발명 진본성 위반 주장·입증하여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인용중지심판도 할 수 있다.
3. 당연무효 항변 거부 - 소극	
(1) 특정제	
	특허발명은 무효심판 인용심급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권리로서 다른 제차에서 무효임을 제때로 판단할 수 없다.
(2) 사안	

	2은 2등에서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를 당면 우선 주장할 수 없다.
4. 권리범위 부재 - 2주	
(1) 특허제	
	실용성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범위를 일정한 수 있으나 이를 진보성 위반에 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하여 권보성 위반이라든 권리범위 부재할 수 없다.
(2) 사안	
	2은 진보성 위반은 이유로 특허를 권리범위 부재할 수는 없다. <span style="float: right;">된다고 주장</span>
5. 권리내용 - 2주	
(1) 중재 특허제	
	진보성 위반인 경우 침해 소송 범위에서 진보성 위반 여부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제1항 특허제	
	<del>무효</del> 실질적 정의. 당사자 형평. 공익. 특허적 목적 등 고려할 때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제에 대해 특허 행사는 권리내용으로 허용될 수 있고, 침해인용 범위는 그 전체에서 진보성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정답	

당사자 사이 협동. 특허권 입법 목적, 고려할 때 적합  
취사제 타당하다.

#### (4) 사안

2은 甲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수 있  
고 침해소송 법원은 그 취지로서 진보성 심리·판단한  
수 있다.

#### 6. 자유기술행위

2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자신의 발명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수 있다. 이는 문헌침해인 경우에도 같다.

#### IV. 선행 (4)

5.5

##### 1. 동등성

甲 특허발명의 진보성 관점에 따라 甲 대응 견지 사  
려된다.

##### 2. 진보성 인정되는 경우

###### (1) 조합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취사제

각 구성이 공지된 사실만으로 진보성 복성되지 않고

각 구성 유기적으로 조합될 때로서 구성의 골조상 인  
성되는지 그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선행물과 개화물 취사제



침해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었는지. 출원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 제반사실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시공방법에 1.2 각 공지만으로 진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침해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 등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행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3.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

(1) 제3자 재해결 권리로 취득

특허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제3자로부터 등을 통해 제3자로 그 하자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제3자의 재해결을 할 수 있다.

(2) 사안

甲은 진보성 문제되지 않는 방법 A+B+D의 제3자 재해결을 통해 A+B+D와 A+B+C의 균등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끝〉

20.5

	6.5 <문-2>
I. 섯 (1)	
1. 이용관계 여부-적극	
(1) 문제점	
	法 138조 관련 法 48조 '이용'의 의미 문제된다.
(2) 학설	
	주요부포함설, 개량학자설, 그대로포함설, 실시불가피설, 침해 불가능설 등 있다.
(3) 취지	
	<u>이용관계란 후특허발명이 섯특허발명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섯특허발명의 본질을 섯 포함하고 이 를 그대로 이용하되, 섯특허발명의 일체성이 후특허발 명에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u>
(4) 검토	
	法 138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취지 타당하다.
(5) 사안	
	2의 특허발명에서 甲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섯 포함하 고 C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일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발명 이용관계 해당한다.
2. Z 실시 가부-적극	
(1) 실시가능 - 法 48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자 동의 없이 자신의 발명 실시할 수 없다.
(2) 사안	Z은 甲에게 허락 받은 등 사실 보이지 않아 A+B+C 실시할 수 없다.
3. Z 실시 방법	
(1) 허락	Z은 甲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A+B+C를 실시할 수 있다.
(2) 허락실패 - 法 138조 1항	Z은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 을 때 통상실시권 허락실패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B+C 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충분한 기술적 진보가 가져 는 것이어야 한다. (138조 2항)
(3) 특허권 양수	Z은 甲 특허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발명 실시할 수 있다.
(4) 무효실패 청구	甲 특허권 하자 있는 경우 무효실패 청구하여 인용심판 확정 후 실시할 수 있다.
(5) 기타	재심청구, 선진이론, 이해-견제, 중재 등 시도해볼 수 있다.

II. 설문 (2)

2.5

1. 실시 가박 - 인격

(1) 실시 제한

이용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한되거나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특허권을 침해한다.

(2) 사안

甲이 2에게 허락 등 받은 사정 없이도 甲은 A+B+C 실시할 수 있다.

2. 실시 방법

(1) 허락

甲은 2에게 허락받아 A+B+C를 실시할 수 있다.

(2) 허락심판 - 13823항.

甲이 2에게 허락심사를 허락한 경우 2이 실시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은 수 없는 경우에는 甲은 허락심사청구각심판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양도

甲은 2 특허권 양도하여 A+B+C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무효심판 청구. 재심청구. 실질을. 특허. 변경. 중재 등 시도 가능할 수 있다.

## Ⅳ. 실용 (3)

### 1. 실시 가법 - 2국

#### (1) 침해 여부 - 2국

丙이 A+B+C 실시하는 경우 甲 및 乙 2 국가를 침해다.

#### (2) 사안

丙은 甲, 乙에게 허락받은 사안 없으므로 A+B+C 실시할 수 없다.

### 2. 실시 방법

#### (1) 허락

丙은 甲과 乙에게 허락받아 A+B+C 실시할 수 있다.

#### (2) 허락심판 - 불가

丙은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청구인 경우 없으므로 甲, 乙은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3) 특허권 양도

丙은 甲, 乙 특허권을 모두 양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 무효심판 청구

丙은 甲, 乙 특허권 하자 있는 경우 무효심판 청구하며 인용심판 확정 시 실시할 수 있다.

#### (5) 기타

재심청구, 항소, 갱신, 중재, 신원이를 등 시도해볼 수 있다.

〈끝〉

<문-3>

6.5

I. 설문 (1)

1. 실행행위 독립 원칙

실행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행위별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구매행위 - 소극

구매는 법 22 조 3항 내역의 실행행위가 아니므로 침해 생립하지 않는다.

3. 사용행위 - 소극

(1) 인권을 의의. 취지

특정당계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행위 을 위해 취제로 확립될 법리다.

(2) 방법반영 인권을 취제

1) 관련 취제

특허반영이 방법반영인 경우, 특허권자 등 계당계리자로부터 방법반영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물건은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 ~~그 물건을 통해 방법~~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인권되고, 그 물건을 통해 방법반영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 2) 방법발명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

사회통념상 방법발명 실시 의미 타당도가 있는지, 방법 발명의 특유한 해결방법이 가능한 기술사상 핵심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는지, 그 물건으로 수행하는 공정이 적게 공정이시 차지하는 비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논거

①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양식, ② 특허권자의 이윤확보 기회 보장, ③ 방법발명에만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을 근거로 한다.

## (3) 사안

## 1) 방법발명 실질적 구현 물건 여부

이 사건 용접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예만 사용되는 장비인점, 특허발명인 용접방법에 대한 기술사상 핵심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 고려하면 용접기는 방법발명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에 해당한다.

## 2) 신의 여부

甲으로부터 동생신사호 허락받은 A로부터 구매할 바 특허권 목적 달성하여 특허권 신의되었다.

## 3) 신의

용접기 실효 사용은 특허권 침해 아니다.

4.5

## II. 설문 (2)

## 1. 눈짐작

눈짐작 기법 중 프로브 교체 행위가 특허법상 제품  
생성으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 2. 간접침해 의미. 취지 → 법 127조

특허권자 실현을 위한 위해, 직접침해 수단적 행위로서  
직접침해 개연성 높은 행위에 대해 간접침해 생략한다.

## 3. 권리·재생산 법리 취지

## (1) 판단방법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행  
위로 인해 해당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권리로서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생성한 것으로서 특허권 침해이다.

## (2) 고려 사항

당해 제품의 구성요소, 성질, 이용형태, 특허법 입법취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4. 사안

## (1) 권리 여부

이상의 통섭기는 여러가지 구성들이 포함될 물건으로서  
 프로브는 그 구성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프로브는 수식  
 을 그 통섭기 사용 중에 교체가 필요한 점, 프로브는  
 통섭기의 가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공이 지  
 령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프로브 교  
 체 행위는 통섭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의 수리행위라고 판단된다.

(2) 소결

따라서 2의 프로브 교체는 통섭기 구매로 특허권  
 소멸 이후 수리행위 이므로 역시 특허권 소멸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특하게 침해 아  
 니다.

5. 결론

2 행위 이 사건 특허권 침해 아니다.

II. 선문 (3)

6.5

1. 제작·공급행위

(1) 직접침해 여부 - 2국

통섭기의 제작·공급행위는 방법발명의 방법 사용, 즉



고의의 방법 사용 침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접 침해는 아니다.

(2) 간접침해 - 법(21)조 2호

방법발명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 생산·양도 등 행위는 특허권 침해한 것으로 본다.

(3) 직접침해 여부

독립성·종속성 대립하고, 실시행위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고 구체적 사안별 평가가 다르다.

(4) 업으로서 실시 여부

丙 회사는 업으로서 통상적 제작하고 B회사에게 공급한바 업으로서 실시는 인정된다.

(5) 제3자 제작·공급 관련 실시행위

간접침해는 특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권 침해로 보는 구성으로서 통상 실시자가 제3자에게 제품 제작 의뢰 후 공급받은 경우 이른 간접침해로 보면 특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실시 행위가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되는 점, 특허 제3자는 실시계약 체결 시 제3자 의뢰를 예상하여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 새로운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 제작·공급 행위는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는다.

(6) 사안

쌍당 실시권자 B로부터 용접기 제작 의뢰받아 용접기는  
 제작하고 B에게 공급했으므로 丙의 제작, 공급행위  
 는 甲 특허권 침해 아니다.

## 2. 경수-시연 행위

### (1) 관공 특허권

제작, 공급행위를 침해로 보지 않는 결과 이에 필  
 징으로 수반되는 경수-시연행위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시연

丙의 제작, 공급 행위가 앞서 실행될 바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필징으로 수반되는 경수-시연 행위도  
甲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 3. 결론

丙의 행위들은 이 사건 특허권 침해 아니다.

(끝)

## &lt;문-4&gt;

## I. 설명 (1)

## 1. 신의를 의미하지

정당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신분이 특허권 행사 미치지 않는다.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 활성을 위해 신분제를 확립된 법이다.

## 2. 물건반영 신의를 취할 때

특허반영이 물건반영일 경우, 특허권자 등 정당한 권자로부터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되고, 이후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는 특허권 행사가 미치지 않는다.

## 3. 사안

## (1) 신원 여부 - 판

甲은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프린터 X를 구매했으므로 甲의 프린터 X 에는 특허권 신분이 있다.

## (2) 신원

따라서 甲의 프린터 X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행사가 미치지 않으므로 침해 아니다.

II. 실용 (2)1. 숙리·재생상 없이 새시(1) 특허법 방법

특허법 방법이 물건 변경인 경우 신상품 등을 교체한 때 그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숙리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 침해가 아니고, 동일성을 해할 수 없는 경우 실질성으로 생상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 침해 성립한다.

(2) 고려 사항

당해 제품의 개요 및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 입법 취지 등 종합성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1) 재생상 여부

프린터 X는 발체 A와 카트리지 B의 결합에 그 특성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카트리지는 교체가 필요한 것이긴 하나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행위는 프린터의 특성과 관련된 부품으로서 특정 카트리지 교체행위는 실질성으로 프린터 X 생상행위에 해당한다.

(2) 신성

특정 프린터 구매로 인해 여전히 특정 신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침해다.

## III. 설문 (3)

1.5

## 1. 소진 여부 - 소극

J은 정당한 권리자인가 아닌 2로부터 프린터 X 구매  
행위 특하게 소진되지 않는다.

## 2. 업무상 실시 여부 - 소극

J은 프린터 X를 가장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결론

업무상 실시가 아니므로 J 사용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 IV. 설문 (4)

1.5

## 1. 생산 여부 - 적극

J의 카트리지 교체행위는 앞서 살려볼 바와 같이  
생산물 프린터 X의 생산행위이다.

## 2. 업무상 실시 여부 - 소극

J은 프린터 X를 가장적으로 생산하여 업무상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결론

업무상 실시가 아니므로 J 교체행위는 침해가 아니  
다.

V. **실용 (5)**1. **간접침해** 의의 취지 - 법 121조

특허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침해 제 1항의 행위로써 직접침해 개연성이 높은 경우 간접침해 성립할 수 있다.

2. **특허발명의 경우** - 법 121조 1항

특허 발명 사상이며 사용되는 물건은 생산, 양도 등 하는 행위 특허권 침해로 본다.

3. **실용 발명 배제**

실용 발명의 경우에도, ① 그 구성이 특허발명의 불진성 구성에 해당하고, ② 특허발명 사상에 사용되는 것 이외 다른 용도가 없고, ③ 알만한 거래계에서 쉽게 구할 수 없으며, ④ 사용시 관계가 예시되어 있고, ⑤ 특허권자가 따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용 발명으로 볼 수 있다.

4. **배제**

실용 발명 공용성 문제 등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5. **검토**

간접침해 취지,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 실용 발명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 실용 발명에 해당할 수 있는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



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세 일음 타당하다.

## 6. 사안

### (1) 사용품 여부

카트리지 B는 프린터의 부품 A와의 결합에 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질적 구성에 해당하고, 다른 명도가 없으며, 소모품으로서 사용에 따라 수시로 교체가 필요한 점, 특허권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 시장 상 불명확하나 일반 거래처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카트리지 B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특허반대청 프린터 X의 사용품에 해당한다.

### (2) 신체

2의 카트리지 B 제조·판매는 사용품 제조·판매로서 간접침해 해당한다.

<이 하여 배>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1] (특허법은 아하, 그야아 한다.)

## I. 실문 (1)

### 1. 사권적 권리

4. 2

甲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乙에게 시변 청구 및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사권적 권리를 취할 수 있다.

### 2. 민사적 권리

#### (1) 침해금지청구 조. 126조

甲은 乙에게 침해를 그만두는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등권 1항), 이에 침해를 저지 등을 함께 청구 가능하다 (등권 2항).

#### (2) 손해배상청구 조. 128조

甲은 乙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 형사적 권리 - 침해죄 관련 조. 225조

乙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비권력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서제), 甲은 乙에게 침해죄로 고소 가능하다.

### 4. 기타 권리

① 甲은 乙에게 권유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하기  
 나(근로 135조), ②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합의,  
 ③ 특허권 양도 및 ④ 허락·금지 등은 고려해볼  
 수 있다.

## II. 실문(2) 25

### 1. 실시권

근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므로 乙은 우선적으로 실시  
 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특허권 하자 검토

① 실문(3)에서 논란 바뀐 같이 甲 특허권의 하자  
 를 조사하여, ② 침해소송 내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은  
 하거나, ③ 무효심판 청구 등은 할 수 있다.

### 3. 실시권 설정 계약

乙은 甲의 특허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하여 실시를  
 합법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

### 4. 등록 및 허락심판 청구

① 甲의 A+B와 乙의 A+B+C는 동일 발명인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② 2은 자신의 권리 범위는  
특히 특허 등록하여 ③ 조 138 조의 통상 실시권  
해당성만을 확보할 수 있다.

5. 가라 권리

① 2은 甲에 대해 소극적 권리방위책인 상환은 청구  
하거나 (조 135 조 2항), ② 자신의 권리로 역방벽  
하리 쉽게 대응 시로, ③ 하회. 공제 등을 고려  
해볼 수 있다.

III. 심문 (3)

8.4

1. 침해금지청구 조 126 조

특허권과 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금  
지를 청구하는 소용이다.

2. 특허권 행사 검토

(1) 손해상 부정 여부 (소극)

1) 손해상 조 29 조 1항

특허권 침해의 대가인바, 침해가 없는 동안까지  
것은 아니다.

2) 사안



상행각을 단일의 권리가 따라(취사제), 甲의 A+B를  
상행발명 1(A)와 상행발명 2(B)를 결합해 신  
구성 권리는 불가하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권보성 부정 여부

### 1) 권보성 크고 2) 2항

기술·산업발명을 위하여, 공개후로부터 쉽게 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4항

상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A+B가 큰술될 수도  
있으나, 그 권리도 관련하여 甲 특허권의 권보성  
부정함을 권리로 아하 권리 검토한다.

## 3. 침해소송에 권리

### (1) 양면무효 관련

#### 1) 취사제

특허권에 하자가 있다라는 무효성론 형성 권까  
지 그 권리는 응 유효한 것임시 다른 권  
리에서 양면무효는 권리로 판단 불가하다.

#### 2) 사안

甲 특허권에 하자가 있다라고 2은 양면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2) 권리범위 부당 관련

## 1) 사례

① 권리범위를 광할 때 특권 내 허가권을 함  
각해야 하며, ② 선형 부당성 권리범위가 부  
당하다는 입장이나, ③ 진보성 부당성까지 권리범  
위가 부당하다 볼 수는 없다 한다.

## 2) 사안

그는 甲 특허권의 진보성 부당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없다.

## (3) 권리범위의 항변 관련

## 1) 권리 사례

진보성이 부당라는 경우 권리범위를 부당할 수  
없다. 그리고 침해소송 내에서 진보성을 상  
권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된다.

## 2) 관습, 사례

① 신기술 광의·특허법 입법 목적·경제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② 무한정 확장 권리권도 진보  
성이 부당성이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침해해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로 허용할 수 없다.  
③ 침해소송 심판 방법으로서도 권리범위의 항변이  
없는 경우 그 양부 원인의 관례로서 진보성을

심니. 판단할 수 있다 한다.

### 3) 검토

특허권에 진보성 하가 있음에도 특정-비타릭 권개행  
 사를 하여할 경우 권리에 상해 아긔나노바, 권함  
 수체제가 타당하다.

### 4) 사안

2은 甲 특허권이 진보성이 없기 무로 권 개  
 이 명백함을 주장하여 권개행의 항변 가능하다.

### (4) 자유가들의 항변

만일 2의  $A+B+C$ 가 자유가들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2은 자유가들의 항변 가능하다.

## 4. 침해소용 이 권리

### (1) 무원심판 조(133조)

공익성, 하가 있는 특허를 소멸시키는 심판 제도이다.

### (2) 사안

2은 무원심판을 청구하여 甲 특허권을 진보성 하  
 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때 침해소용에 대해이  
 소용 능히 인정 가능하다(조(164조)).

못

IV 섹션 (4)

5.5

## 1. 논쟁쟁점

甲이 A+B의 진보성이 부진한지 판단한 경우와  
그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고려 검토한다.

## 2. 진보성이 부진한지 판단한 경우

## (1) 경쟁의 재발견 체계

## 1) 총체 하위심 체계

경쟁을 총체 특허권 하자가 다뤄지는 경우에는  
권리범용이 허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것으로 보는 양성이 있다.

## 2) 하위 개념 체계 방출

권리범용의 항변이 취한 경우 특허권자는 경쟁범용  
항자 등을 총체 경쟁을 인정받아 하자가 다뤄지  
나 다뤄진 후로 권리를 주장. 양측하여 재발견  
가능함을 방출으로 인식하였다.

## (2) 사안

① 甲은 A+B+D를 반경의 실용에 기재한 아,

② 경쟁범용 항자 등을 총체 A+B를 A+B+D로  
강박 보강하여 진보성 하자는 극복할 수 있음  
주장. 양측하여 경쟁의 재발견을 시도할 수 있다.

## 3. 진보성이 부진하지 않는지 판단한 경우

(1) 전방반영 권보성 판단법기 취사제

1) 판단의 대상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의 권보성 판단의 대상이다.

2) 산정특허 결합요인

그 결합이 이룰 수 있다는 압외-종류 생생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 제반 사항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리 같은 결합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A안

① 甲은 A와 B에 A+B에 이룰 수 있다는 압외-종류 등이 없으며, ② A+B 전체가 전방반영의 권보성 판단 대상임을 뜻하며, ③ A+B가 권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능하다. [결]

20.6

[문제-2]

I. 실문(1)

6.5

1. 이용관계 여부(쟁점)

(1) 문제점

201983의 '이용'의 취지에 따져 논란이 있다.



## (2) 핵심

① 주안부 포함선, ② 개방선, ③ 그려선, ④ 선의 불완전성  
등이 존재한다.

## (3) 취지

이용관계인 후 발명이 선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서있는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여, 선 발명의 사를  
진부 포함하리 이를 그려 적용하여, 후 발명에  
선 발명의 발명으로서 인체성이 부여되는 것은  
있을 의미한다.

## (4) 결론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 발명이 후 발명 때  
에서 기술사상의 그려 부여되는 있어야 하되, 바,  
취지가 타당하다.

## (5) 사안

2 발명은 1 발명 A+B를 그려 포함  
A+B+C 로서 인체성이 부여되는 것은 바,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 2. 2의 실시 가부

## (1) 후진권자의 실시 가부 201982

이용 관계에 있는 경우 선진권자의 권리 없이  
후진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 (2) 사안

원칙적으로 2은 A+B+C를 다루고도 심사할 수 있으나, 그 심사 방법에 대해 아하 검토한다.

## 3. 2의 심사 방법

## (1) 심사 하부 요청

2은 甲에게 심사 하부로 구하여 A+B+C를 심사할 수 있다.

## (2) 통상심사인 하부심판 청구 제도(조.138조)

① 甲이 강력한 사유 없이 하부를 요청한 경우, 2은 통상심사인 하부심판은 통해 강제심사인으로 신청 가능한바, ② 이때 2의 심판이 A+B에 대해 심정한 영대청 가리를 가진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는 지점은 주장 입증해야 한다(조.138조 2항).

## (3) 특허권 양도

2은 甲의 특허권 양도에 심사할 수 있다.

## (4) A+B 구매 및 소진

2은 甲으로부터 A+B를 구매하여 특허권이 소진된 A+B를 강행하게 이용할 수 있다.

## (5) 기타 권리

甲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등 권리 가능하다.

## II. 실문 (2)

9.5

## 1. 甲의 선택 거부

① 선행권자가 먼저 허락 없이 후권권자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② 아바 선택 방법 검토한다.

## 2. 甲의 선택 방법

## (1) 선택 허락 요청

甲은 乙에게  $A+B+C$ 에 대한 선택 허락할 수 있다.

## (2) 크라 카이센스 항구 조. 138 조 항

① 甲이 乙에게 조. 138 조에 따른 통상권리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② 甲은 乙에게 통상권리 허락 심판은 통해 크라 카이센스를 선택할 수 있다.

## (3) 특허권 양복

甲은 乙의 특허권을 양복할 수 있다.

## (4) 기라 조

$A+B+C$ 는 구체하여 선택할 방법 등이 있다.

## III. 실문 (3)

9.5

## 1. 丙의 선택 거부

① 제3자 丙이  $A+B+C$ 를 선택하게 될 경우,  
② 甲과 乙의 특허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되는 바.

③ 그 실시 방법에 대해 이하 검토한다.

## 2. 丙의 실시 방법

(1) **실시 방법** 유형

丙은 甲, 乙 모두에게 실시 방법 유형, 실시권 및  
권한을 A+B+C를 실시할 수 있다.

(2) **실시권** 분가

丙은 제34조 甲, 乙에게 38조의 실시권인  
실시권을 할양할 수 있다.

(3) **특허권** 양수

丙은 甲 및 乙의 특허권을 양수하여 A+B+C를  
실시할 수 있다.

(4) **무효심판** 청구

丙은 甲, 乙의 특허권 허가를 받든, 무효심판  
청구에 인용되면 특허 A+B+C를 실시 가능하다.

**결론**

[문제-3]

I. 실문 (1)

5.5

1. 논쟁거리

① 용량기를 구매할 행위는 실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아 침해가 생립하지 않고, ② 용량을 사용하여  
 방법반영을 실시한 것이 특정한 침해이러므로 방법반영  
 소인이러므로 인정하여 심판한다.

## 2. 소인론의 의미·취지·근거

적법하게 양권된 특허문건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인되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식재산법  
 과 권리 범주의 귀양은 있으나 문건의 사후권  
 유통 및 거래 안전을 위해 취하게 함이다.

## 3. 방법반영의 소인론 취지

### 1) 소인론 적용 법칙

방법반영의 특허권과 증 방법반영이 신작으로 구  
 현된 문건은 적법하게 양권한 경우, 특허권은 목  
 록을 다하여 소인되어, 이후 권유·양수인 등이 그  
 문건을 사용하여 방법반영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특정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 방법반영을 신작으로 구한 문건

① 그 문건에 방법반영의 실시에 <sup>사회공익상 필요·충요</sup> 다른 용도가  
 있으나, ② 그 문건이 방법반영의 특정한 제정권이  
 기한한 것은 기술상행이 행하는 전부 포함한다.

③ 그 문건은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공익 방법반영

권제 공평에서 차이는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3) 논의

①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정, ② 대가합본 거래의 충족, ③ 방법반영은 권리로부터 제외할 합리적 이유의 부재, ④ 소액의 특허 방지 등은 논거된다.

## 4. 사안

① 이 사건 용접기는 이 사건 특허반영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병렬로 다른 동력 장치가 있다. ② 신기술 부분 명 하나, 이 사건 특허반영의 기술상의 핵심은 권부를 포함하여 실시된 신기술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용접기'는 '이 사건 특허반영'을 신기술으로 구현한 물건으로서, ④ 객관적 실시권자인 A회사로부터 이를 구매 사용한 행위에 방법반영 특허권이 소멸되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5. 결론의 제언

이 사건 특허반영 특허권의 소멸으로, 그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II. 실용 (리)

35

1. 논점 정리

프린트 복제 행위나 특허권 관련 용어 사용의 인  
한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 묻지 않겠다.  
간접

2. 수리 제정된 법의 취지

(1) 신빙 제정된 관련 기술

부동액 교체로 인하여 기존 제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용의 안전성 수리 행위로 보아 침해 성  
질 않는다. 부동액 교체가 기존 제형의 동일성을 비롯한  
경로에 이르면 신빙으로 생각 행위로 보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동일성 판단 방법

제형의 객관적 성분, 적용형태, 특허법 규정 취지를 고려  
하여 판단한다.

3. 사안

(1) 직접침해 여부 (소극)

- ① 이 사건 용접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인용품으로서,
- ② 성분 이를 생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조. 2로 조. 3호 내의 성질의 방법상 성질은 해당  
않는다. ④ 직접침해 생각하지 않는다.

## (2) 간접침해 여부 (52)

### 1) 신기술 내방은 여부 (52)

신기술 불보영해. 이 사건 용접기는 드로브 테에 많은 부품을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드로브는 수직 근치행위로 감로 받아 이 드로브 수직 근치행위 사용으로 파악되는 바, 그의 드로브 근치행위는 제2항 사용인 수직 행위로 파악된다.

### 2) 신기술

따라서 신기술 (1)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의 근치행위 용접기가 특징인 수직 근치행위, 그의 드로브는 수직 근치행위 사용인 행위는 간접침해는 물론 직접침해로 인정 받는다.

## 4. 신기술의 해결

그의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아니다.

## III. 신기술 (3)

5.5

### 1. 신기술의 특징의 원형 및 논점

- ① 침해는 신기술의 원형과 동일해야 할 것인가, ② 그의 이 사건 용접기 제2항 근치행위에 대해서는 간접침해 여부, ③ 그의 사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침해 여부 문제이다.

## 2. 1차의 용기 제부·판매 행위 침해 검토

### (1) 간접침해 검토(2)로

직접침해 개연성이 높은 1차 단계의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여 특허권 침해권 보호에 이어야 한다.

### (2) 방법반영의 경우 검토(2)로 2차

방법반영 침해만 사용하는 물건은 1차(사용 제1)하는 행위는 간접침해로 본다.

### (3) 1차권자로부터 권리를 제3차에게

#### 1) 간접침해의 한계

간접침해는 이따가게 특허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침해권으로 보호하고 하는 것이다.

#### 2) 제3자가 1차권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1차권자가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아 특허반영 침해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권리를 제부·양도 등의 행위는 간접침해로 본다면 ① 1차권에 부당한 제부 이 가해되고, ② 특허권이 부당히 침해받은 결과를 회피하여, ③ 특허권자로서는 1차권 침해 1차권자가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아 특허반영 침해한 것 예상하여 특허권 거래에 상응하는 이익을 획득 가능 한바, 특허권자의 독립적 이익이 세리 침해권리 보 볼 수로 없다 한다.

3) ~~판~~

따라서 신사권으로부터 권리 발생. 양도  
하는 행위 등은 간접행위로 볼 수 없다.

(4) 사안

① B와 A는 甲과 계약한 정당한 신사권자로서, ② A는  
이러한 B로부터 용감히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  
양도한 바, ③ B가 丙의 행위가 권리를 양도하여  
신사'하는 행위이긴 하다. ④ ~~간접행위로 볼 수 없다.~~

## 3. 丙의 갑·사면 행위 침해 정도

(1) 취지

권리의 양도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이상  
그 권리에 관하여 취득하는 갑·사면 행위를  
침해로 볼 수는 없다 한다.

(2) 사안

① 丙의 용감히 갑·사면은 이권 취득반영 신사에는  
해당하나, ② 이는 B에게 권·양도하는 권에서 관속  
권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서, ③ 침해에 해당 않는다.

## 4. 양도의 해산

丙은 이권 취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

[문제-4]

I. 선택 (1)

2.5

1. 선택이론의 위·취·근거

객관하게 특허권과 등록권의 양도인 특허권에는 권리권이 선택권이라는 이론으로, 객관적으로 권리 명분 규정은 없으나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안으로 권리 부여제로 형성된 법이다.

2. 물건반영 선택이론의 취지

특허권과 등록권의 특허반영을 구한 물건이 객관하게 양도된 경우, 그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목적을 다 하여 인리는 바. 이후 양도인. 권리가 후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안

특수 특허인사인 甲으로부터 X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한바, 같은 날 신사법적인 하라므로 그 X에 대한 甲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선택의 제한

丙의 X 사용은 제한이 없다.

## II. 식민(나)

3.5

## 1. 논점(나)

카트나리 식민 항파 리듬 사용의 인연이라서 식민이  
 권용이 침해가 아닌, 식민 생산 행위로서 침해인지  
 문제된다.

## 2. 식민. 라이선스 법 제 41조

## ① 라이선스 여부 관련 문제

부품 식민으로 라이선스 무리라는 경우 사용 인연이 무리  
 인연 침해 인정 안함, 부품 식민으로 사용이 라이선스  
 침해 인정되면 식민 생산 행위로서 침해에 해당한다.

## ② 라이선스 관련 방법

리듬의 식민적 사용. 이용행위, 특허법 제 41조 제 2항  
 제 2호 관련한다.

## 3. 사안

① X는 본체 A와 카트나리 B의 '조합에 그 특징이' 관련  
 B는 X의 식민적 권리와 관련이다. ② B의 식민으로  
 인연이 해당 권리에 이유가 되어, ③ A는 B를 인  
원한 구조부터 구비. A용하여, ④ A의 행위는 무  
 관련으로 X는 식민적 생산 행위에 해당한다.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



4. 신문의 해권

丙의 B 고지 행위는 X의 신빙성 있는 행위로서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

III. 신문 (3)

1. 실시 여부 (각각)

J이 관련 없는 Z에게 X를 구매해 사용한 행위를 Z로 3호 가목의 물건반영의 신사행위에 해당한다.

2. 침해 여부 (각각)

- ① 다만 침해 성립은 구매시 '당연히' 신사는 연쇄반(권, 942).
- ② J은 가목의 ~~신사~~ 침해 성립 않는다.

IV. 신문 (4)

1.5

1. 신빙성 있는 행위 (각각)

신문 (2)에서 생활할 아민 같이, B의 고지 행위는 X를 신빙성 있는 행위로서 물건반영의 신사에 해당한다.

2. 침해 여부 (각각)

다만 가목 신사시 침해 성립 않는다.



V. 식분 (5)

3.5

## 1. 실시행위 유형의 인정

실시행위별로 침해 여부는 구분한다.

2.  $\beta$ 의 위조 행위

## (1) 간접침해 조(2)로

특정한 상표권 행위를 위해, 직접침해 인신계의 인정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 (2) 물건반영의 경우 조(2)로 보

물건반영의 독자적인 생산에만 적용되는 물건은 실시(사용 제외)하는 행위는 구별한다.

## (3) 조(3)의 경우 제외

조(3)이므로 반영의 본질적 구성에 해당한다, 다른 용도가 없다, 쉽게 변형할 수 없다, 물건 자체에서 인체가 예상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용이 다른 기구. 판매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받기 해당한다.

## (4) A안

① B는 X의 본질에 있어 특정한 것은 물건으로 본질적 구성에 해당하며, ② 다른 용도가 없다, ③ 수시로 인체가 필요할 것, ④ A가 별도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보아, ⑤ B는 X의 인정받기 해당한다 하, ⑥ 이를 판매했을 때 2 행위도 간접침해 해당한다.

3. B의 침해행위

아닌가? X의 권유로 B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한 것이다.

4. 신문의 해설

따라서 2이 B를 새로 침해하는 행위로 X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이야기>

